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현행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의 총칙(안 제1조 ~ 제3조)

- 제안제도의 목적, 용어의 장의, 적용법위

나. 제안의 제출 등(안 제4조 ~ 안 제9조)

- 제안의 제출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안의 접수 및 제안의 보완에 관한 사항
- 생활공감정책의 발굴과 보상에 관한 사항

다. 제안의 심사(안 제10조 ~ 제15조)

- 성주군 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제안의 심사기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 등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라.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안 제16조 ~ 제22조)

- 제안의 등급부여 및 표창에 관한 사항
- 채택제안에 따른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상여금및 그 밖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마.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3조 ~ 제27조)

- 제안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채택제안의 수정·보완 실시 및 타기관 실시권고에 관한 사항
-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률

○ 공무원 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국민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주군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라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먼저 공모 제안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군수가 제안과제를 제시하고 군민과 공무원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민제안을 발굴하고, 동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포상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안을 제출하여 불채택 통보를 받은 경우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참정에 권익을 신장함으로써,

○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제도개선을 기여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로서 법령을 검토한바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군수가 제안과제를 제시하는 공모제안과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하는 이 외에는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매회 절대적 평가로 등급을 정하게 되므로 제안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